

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66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8. 1. .
발 의 자 : 방 미 숙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-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 확산으로 범 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, 기업 및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시장은 자매결연 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(안 제4조)
- 라. 기업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결연식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바. 자매결연 참여기업체에 인증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아.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**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**

5. **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**

6. **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**

7. **입법예고 결과**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월 23일 ~ 2월 5일(14일간)

나. 의견내용 : “의견 없음”

8. **부서협의 결과 : 의견없음**

9. **참고사항 : 해당없음**

10. **관련부서**

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(凡)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전개·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기업”이란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의 기업체, 의료기관, 대형음식점,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.
3. “1사 1경로당 자매결연”이란 경로당과 기업 각 1개소 간에 해당 기업이 추진하여 교류·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.

제3조(책무) 시장은 1사 1경로당 자매결연(이하 “자매결연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
 - 가. 매칭(matching) 상대방 및 지원 희망사업
 - 나.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
3.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5조(추진사업 및 지원) ① 시장은 기업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
2. 방문 자원봉사 활동
3.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
4.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
5.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.

③ 시장은 기업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「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비용지원)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현판 제작비
2. 인증패 제작비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7조(인증패 수여)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·기업, 동장,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,

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,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(supporters)를 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(표창)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로당 기업, 후원자, 공무원 등에게 「하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사후관리)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·효과 등을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